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정책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대출전월 대비,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최대 0.2%p
 - * 12개월 유지시 1인당 0.1%p, 24개월 유지시 인당 0.1%p 추가환급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전월 대비 6개월 후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 시 고용 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 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고용은 최대 2년)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용자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재정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정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절차

-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용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 월 조정 가능
 -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 및 비대면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와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 용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⑥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 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증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증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 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⑬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기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신규지원 예외)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기업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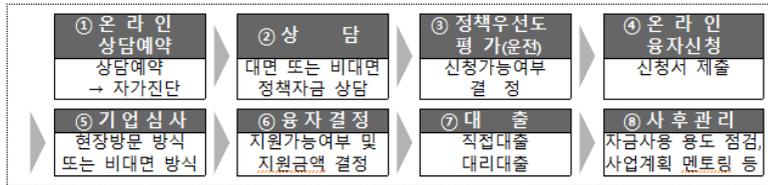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용자 절차 운영

-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 ② 상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용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 ④ 온라인 용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은 보증서 취급 가능)

- ⑤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 여부 결정

- ⑥ 용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를 결정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6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600억원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6,2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201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가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세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 되는 설비구입 용도의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신성장 기반자금’입니다.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 들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수출거래 중 추가로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실적이 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 추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기업 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 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외에도 자금 종류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장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지역 조례·규칙, 부처별 지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1-1 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미만 창업 중소기업 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일자리창출촉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인재육성**
 -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근로시간 단축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응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지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융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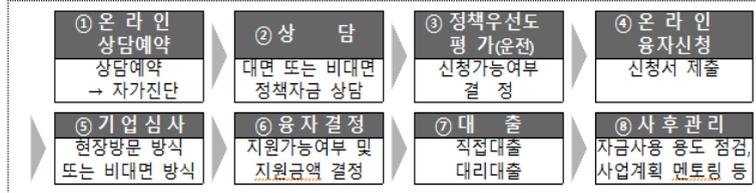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3,000억원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13,251개사 중 11,296개사 2조 5,500억원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②

투융자복합금융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대상

-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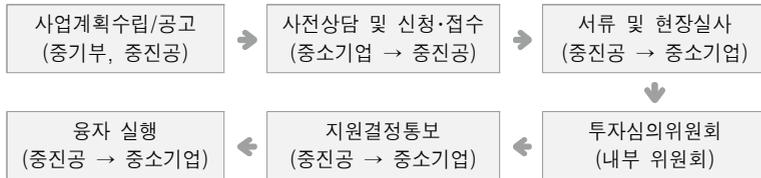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진공이 주식 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증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스케일업금융) : 3년 이내(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혁신형기업 소재·부품 영위기업 등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지원규모

- 투융자복합금융 : 1,2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96개사 중 164개사 1,400억원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1 ③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 '융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산업경쟁력강화 >

-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업력 7년 이상인 중소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응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협동화자금은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및 부지 조성공사 용도 지원 가능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 사회적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

* 혁신성장지원자금(산업경쟁력강화)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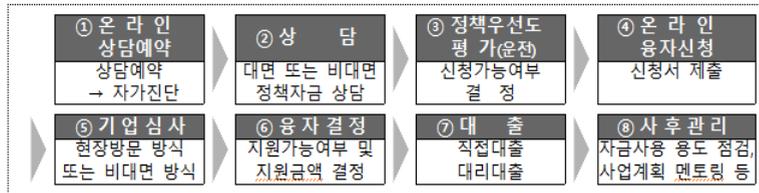
- 응답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 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1조 6,2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869개사 중 2,622개사 1조 7,675억원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④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

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업을 통한 재기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내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몰납 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 한 기업
재창업 자금	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중 ①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상태 혹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④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 ▶ (재창업)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무역조정자금 - 2%고정금리
구조 개선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5%고정금리,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재창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제출서류

- (공통) 용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처리절차

-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계획심사·승인

자금신청

자금심사·결정

- 구조개선자금

신청접수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재창업자금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지원규모

- 재도약지원자금 : 4,200억원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1,299개사 중 1,111개사 2,500억원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위원회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경영위기 기업 대상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자원을 위해, 중진공이 채권은행과 협업하여 '기업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자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워크아웃제도보다 선제적이고 기업중심적인 구조개선·재도약을 지원하는 '21년 신규사업입니다.

1-1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용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 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용자제한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④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피해 ■ 대형사고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보호무역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이란제재 피해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 애로기업으로 6개월 내 원자재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상승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직접 수출(계약)중소기업(최근 1년 내 직수출 실적 또는 6개월 내 체결한 수출계약서 보유) 및 국제물류추진업 영위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 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원자재 수급안정자금) 사지원금액의 50%이상 원자재 구매(6개월 후 세금계산서, 수입신고 필증 등 제출 필요)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 물류비 안정지원 자금 : 연간 3억원 이내

용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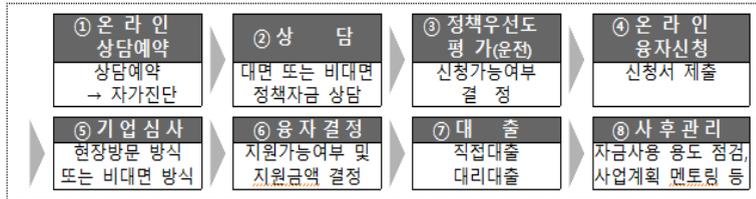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5,276개사 중 5,007개사 8,000억원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실적 보유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 (수출글로벌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BIG3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지원내용

- **용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용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예약 → 자금 상담 → 융자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기업 평가 → 융자결정 → 대출실행

- 지원규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4,0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514개사 중 2,380개사 5,000억원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이 지원가능하며,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출실적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1년간 직접·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판단하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수출실적 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간접수출 :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